



본 자료는 협회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상연구실 | 한아름 수석연구원 02-6000-5850, ariel.han@kita.or.kr
이유진 수석연구원, 02-6000-5649, yujin.lee@kita.or.kr

美, 반도체·핵심광물 232조 조치 도입 및 영향

1월 14일(미국 현지) 백악관은 반도체 및 핵심광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200~30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수 차례 언급했으나, 최종적으로 반도체 관세는 일부 품목에 한해 25%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 관세는 D램, HBM, GPU, 컴퓨터 서버 등 일부 제품에만 적용되며,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 수리·교체, 연구개발(R&D)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달리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주요 교역국과 180일 이내 협상을 우선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필요시 수입제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바, 이번 조치의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IEEPA 소송 패소시 '플랜 B'를 언급했던 행정부는 판결 선고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232조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조치의 내용 및 수준이 낮은 것은 실질적 수입제한 목적 보다는, 최종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대만과의 무역투자 합의와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전 레버리지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클 수 있다. 또한 최근 핵심광물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조기 진전을 바라는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 포고문 주요 내용

반도체

▶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에 대한 25% 관세를 1/15부터 부과

- (경과) 조사 개시('25.4.1.) → 상무부 조사결과 대통령 보고('25.10.24.)
→ 포고문 발표('26.1.14.)
- (대상품목)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파생제품

반도체 232조 관세 대상품목

HS코드	품목명
8473.30	인쇄 회로 어셈블리(디램 등)
8471.50	CPU 등 처리장치(서버 등)
8471.80	사운드/비디오카드용(GPU 등)

- 특정 연산 성능(TPP) 및 디램 대역폭으로 한정하고 팩트시트에서 H200(엔비디아), MI325X(AMD) 등 AI용 첨단반도체를 예시로 명시
- 당초 반도체 파생제품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한 반도체(HS 8541, 8542) 및 스마트폰, SSD, 디스플레이 등은 대부분 제외

▶ 미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용도로 수입되는 품목은 관세 면제

- 미국 내 데이터센터, 수리·교체, R&D, 스타트업, 비(非)데이터센터 소비자·민간 산업용, 공공부문 등 폭넓은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는 관세를 면제
- 용도별 232조 관세 신고용 HTSUS를 세분화했으며, 추후 수입통관시 최종용도(end-use) 인증 등 행정조치 도입 가능성

용도별 232조 관세 신고 방식

신고 HTSUS	용도
9903.79.03	미국 내 데이터센터 (100MW 초과 신규 부하가 필요한 시설)
9903.79.04	미국 내 수리·교체
9903.79.05	미국 내 R&D (연구, 시제품 및 신규 공정 설계·개발·개선 등)
9903.79.06	미국 내 스타트업
9903.79.07	미국 내 비(非)데이터센터 소비자 전자제품(게임, 개인용 컴퓨팅, 전문 시각화, 워크스테이션, 자동차 등)
9903.79.08	미국 내 비(非)데이터센터 민간 산업(공장 로봇, 산업기계 포함)
9903.79.09	미국 공공 부문

자료: CSMS 기반 저자 작성

- 반도체 생산이 소수 지역·기업에 편중되고 미국 내 생산규모가 적어, 관세 부담이 수요처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 반도체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해소를 위해 무역상대국과 협상을 병행 추진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조치 확대 가능성을 시사

- 포고문은 상무장관과 USTR 대표에게 협상을 지속하도록 하고, 포고일로부터 90일 내에 협상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이에 대한 백악관 팩트시트는 근시일 내 반도체 및 파생제품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관세조치 도입 가능성을 언급
 - 상무장관 보고서는 ①1단계: 협상 지속 및 협소한 범위의 반도체 대상 25% 관세 즉시 부과, ②2단계: 협상 종료 후 반도체 전반에 더 광범위하고 높은(significant) 관세 부과 및 관세 상쇄 프로그램 병행을 권고
- 단, 관세조치가 확대·강화될 경우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 투자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관세 상계 제도(tariff offset program)’ 도입 가능
 - (자동차 부품 사례)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위해 수입된 자동차 부품의 232조 관세 부담을 일정 범위(미국 내 조립 완성차 실적 기준) 내에서 상계(offset)하는 제도를 운영 중

▶ 232조 조치와는 별개로 반도체 및 제조장비·파생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예외는 유지

- 반도체(HS 8541, 8542 등) 및 제조장비(HS 8486), 스마트폰 등 반도체 파생제품은 당초 232조 조사 대상으로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25%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 예외를 유지함

핵심광물

▶ 핵심광물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상무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신규 232조 관세 부과는 보류(1/14, 백악관 포고문)

-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과 USTR 대표에게 핵심광물 공급 확보 및 공급망 취약성 완화를 위해 무역 상대국과 180일 내 합의 도출을 지시
- 합의 진전 상황을 보고, 필요시 관세 부과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
 - * 트럼프 1기 자동차·부품 232조 조사 결과 포고문(2019.5.17.)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자동차 수입국과의 협상을 우선 지시하고, 필요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고 25% 관세를 압박했으나, 1기 행정부에서는 실제 관세 부과 없이 종료

2. 우리 기업 영향 및 시사점

▶ 대미 수출 반도체 다수가 금번 관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핵심광물은 협상을 우선 추진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25.8월)하고 그 이상(200~300%)의 고관세 부과도 시사했던 것과 달리, 최종적으로 일부 품목에 한해 25% 관세 부과에 그침
- 핵심광물의 파생제품 범위가 반도체 웨이퍼, 양극재·음극재뿐만 아니라 영구자석, 모터,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등 완제품까지 폭넓게 정의돼 광범위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일단 이번 조치에서는 관세조치가 제외됨

▶ 이번 조치 배경에는 ▲대법원의 IEEPA 관세 소송 패소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일 가능성,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품목인 반도체, 핵심광물에 대한 주도권 경쟁을 펼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을 것으로 분석

- 1/14 오전 美 대법원의 판결 선고일(opinion day)을 앞두고 IEEPA 관세 판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행정부의 선제적 'Plan B' 대응 조치로도 해석 가능(단, 1/14 판결에는 IEEPA 사건 미포함)

▶ (반도체 영향) 한국산 반도체 관세 대상품목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6.7%에 불과하며, 용도에 따른 예외가 적용됨에 따라 금번 조치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반도체 관세 대상품목에 대한 미국의 對한국 수입은 \$72.8억 규모로 총수입 대비 6.7% 수준이며, 이 중 디램 모듈 수입이 99.7%를 차지('25.1~10월 기준)

미국의 반도체 관세 대상품목 수입 현황 ('25.1~10월 기준)

(단위:백만달러, %)

HS코드	품목명	對세계 수입액	對한국 수입액	對한국 비중	주요 경합국별 수입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총계		108,083	7,280	6.7	국가	비중	국가	비중
847330	인쇄 회로 어셈블리(디램 모듈 등)	69,475	7,257	10.4	대만	53.5	베트남	14.1
847150	CPU 등 처리장치(서버 등)	24,535	12	0.0	멕시코	52.4	대만	40.0
847180	GPU	14,073	11	0.08	대만	76.4	멕시코	10.9

자료: K-Stat

- 다만 미국향 디램 모듈 물량은 데이터센터용 비중이 높아, 용도 기반 예외로 관세 면제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對대만 수입 비중은 모든 품목에서 40.0~76.4% 수준으로 높아, 현재 협상 중인 대만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을 가능성 추정
- 한국의 경우 대만 등 제3국 내 조립을 거쳐 미국으로 반입되는 물량도 존재하나, 해당 물량 역시 최종 용도(데이터센터 등) 충족 여부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해 간접적 영향도 제한적
- 한미 무역투자합의('25.10월)에 따라 대만 등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 적용을 약속받은 점도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키는 요인

▶ (반도체 전망) 주요국 협상 및 IEEPA 관세 판결에 따라 관세조치가 확대·강화될 수 있어, 영향 기업은 최종용도, 투자에 따른 관세 상쇄 가능성을 사전 점검할 필요

- 반도체 232조 조사대상으로 상호관세 면제가 적용된 반도체(HS 8541, 8542), 반도체장비, 스마트폰·SSD 등 반도체 파생제품까지 관세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반도체 232조 조치 관련 별도 협상에 이르지 않은 국가는 향후 관세조치 관세 적용 범위 확대, 세율 인상 등 추가 조치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될 가능성
 - (반도체) 한국의 해당 반도체 수출 비중은 1.0%에 불과하나, 중국(30.1%), 베트남(16.0%), 홍콩(13.3%) 등으로 수출되어 반도체 후공정 및 완제품 조립을 거쳐 미국으로 최종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조치 확대시 관세의 간접적인 영향 가능('25.1~11월 기준)

한국의 국별 반도체 수출 현황 ('25.1~11월 기준)

(단위:백만달러, %)

HS코드	품목명	對세계 수출액	對美 수출		주요국별 수출 비중			
			수출액	비중	중국	대만	베트남	홍콩
총계		123,971	10,540	1.0	30.1	24.1	16.0	13.3
8541	반도체 디바이스	3,234	495	15.3	25.7	1.5	27.1	3.5
8542	전자집적회로	126,095	831	0.7	30.2	24.7	15.7	13.5

자료: K-Stat

주: 8541 LED, 광전지 제외

- (반도체 파생제품) SSD와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은 미국의 對한국 수입 비중이 각각 29.2%, 12.9%로 높은 편('24년 기준)

232조 조사 대상 반도체 파생제품·장비에 대한 미국의 수입 현황 ('24년 기준)

(단위:백만달러, %)

HS코드	품목명	對세계 수입액	對한국 수입		주요국별 수입 비중			
			수입액	비중	중국	멕시코	대만	베트남
총계		286,512	7,211	2.4	30.9	19.5	12.4	10.7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 등)	140,233	148	0.1	25.8	34.5	18.6	11.3
8486	반도체 장비	13,391	1,037	7.7	6.7	1.5	4.1	0.4
851713	스마트폰	50,948	108	0.2	81.1	0.0	0.0	4.3
851762	통신기기(교환기, 라우터 등)	55,816	216	0.4	13.7	15.7	11.8	20.5
852351	SSD	18,099	5,280	29.2	2.3	3.4	19.2	9.5
8524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1,739	225	12.9	34.1	3.9	14.1	6.8
852852	컴퓨터 모니터	6,287	199	3.2	78.2	3.1	2.4	8.1

자료: K-Stat

- 향후 대미 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상계 제도를 병행할 경우 우리 기업의 실질적 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나, 자동차 부품 사례와 같이 관세 상계 신청, 요건 입증, 증빙 제출 등 행정부담은 증가할 수 있음

▶ (핵심광물) 즉각적인 관세 도입 없이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반도체(90일)보다 긴(180일) 협상 기한을 제시한 것은 ▲중국 등 주요 핵심광물 공급국에 대한 압박과 함께 ▲최근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핵심광물 관련 협의를 촉진할 목적일 가능성
- 미국은 '팍스 실리카 이니셔티브(Pax Silica Initiative)('25.12월)' 및 'G7 핵심광물 회의('26.1.12.)'를 주도하고 있으나, 참여국들의 대응 속도와 이행 수준이 미국 측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¹⁾

* 팍스 실리카 이니셔티브 : 반도체 핵심소재인 실리콘 공급망 구축 위한 논의. 한, 미, 일,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UAE 호주 등 9개국 참여

** G7 핵심광물 회의 : G7 국가 외 한국, 인도, 호주, EU 등 참여

- 트럼프 1기 당시 조사 후 관세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달리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협상을 우선 지시한 사례가 존재
- 첫 임기 중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경고했으나 실제 부과 없이 종료됐으며, '25년 두 번째 임기에서 관세를 도입